# 『여주역 우남퍼스트빌』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일정변경)

### Ⅰ │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2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18층 8개동 총 602세대

■ 공급개요 (단위: m')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입주				
구분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주거전용	주거공 <del>용</del>	소계	(주차장포함)	계구현역		시기
	59A	59.9384	22.6534	82.5918	40.8014	123.3932	180	
	59B	59.9858	22.1835	82.1693	40.8338	123.0031	68	
	59C	59.9770	22.9772	82.9542	40.8278	123.7820	72	
민영	84A	84.9043	22.6127	107.5170	57.7964	165.3134	88	2023년 3월 예정
주택	84B	84.9270	23.5820	108.5090	57.8119	166.3209	70	o 열 예정
	84C	84.9499	23.7504	108.7003	57.8274	166.5277	18	
	99A	99.9186	26.8373	126.7559	68.0171	194.7730	54	
	99B	99.9407	27.7756	127.7163	68.0321	195.7484	52	

※ 상기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여주시청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전용 85m²이하 주택건설량 10%범위)

(단위 : 세대)

구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예비입주자)						
		59A	59B	59C	84A	84B	84C	계
장애인	경기	3(9)	2(6)	2(6)	2(6)	2(6)	1(3)	12(36)
	서울	2(6)	1(3)	1(3)	1(3)	1(3)	_	6(18)
	인천	2(6)	_	_	1(3)	_	_	3(9)
국가보훈대상자		4(12)	2(6)	2(6)	2(6)	2(6)	_	12(36)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3(9)	1(3)	1(3)	2(6)	1(3)	_	8(24)
장기복무 제대군인		1(3)	_	_	_	_	_	1(3)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3)	_	_	_	_	_	1(3)
우수선수 기능인		1(3)	_	_	_	_	_	1(3)
북한 이탈 주민		1(3)	_	_	_	_	1(3)	2(6)
계		18(54)	6(18)	6(18)	8(24)	6(18)	2(6)	46(138)

<sup>※ 2018.05.04.</sup>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분양일정(예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2020.10.12.(월)	일간신문 및 여주역 우남퍼스트빌 홈페이지(http://yeoju.firstvill.co.kr/)
견본주택 개관(예정)	2020.10.15.(목)	경기도 여주시 교동 119번지 여주역 우남퍼스트빌 견본주택 ※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접수일시(예정)	2020.10.22.(목)	인터넷 청약접수(08:00~17:30)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사이트 통한 청약 접수 ※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예정)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20.10.30.(금)	한국감정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앱에서 조회가능

- ※ 상기일정은 업무 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 공인인증서 필히 지참, 은행창구 접수 불가 / 방문주소는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Pi$

# 특별공급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0.12.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등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단,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은 입주자저축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 : 전용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쳥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여주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85 m² 이 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따라 '세대'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머느리, 손자·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단.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유주택이어도 청약가능.
-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 하며, 확인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한국감정원에서 명단으로 관리되며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가능하시므로 추첨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Ш

### 당첨자 선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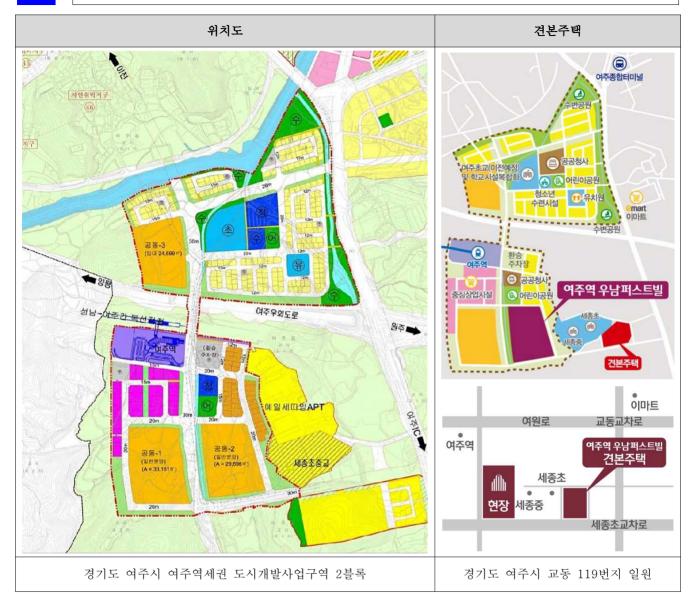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u>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u>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청약홈) 신청이 원칙이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IV

####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집공고일 전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0.10.08.(목)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10.12(월)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참고자료



- ※ 견본주택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 http://yeoju.firstvill.co.kr/
- ※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588-803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VI

# 첨부자료

#### ■ 조감도



#### ■ 홍보전단

